

#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정훈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학교 수업료 징수 방법은 월단위로 산정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수업료를 징수하는 학교에서 일반학교로 진출할 경우 불합리한 산정 방식으로 인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학교의 장이 수업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학교로 진출입할 경우 수업료 산정 및 반환을 예외적으로 일할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발의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